

공개 자료

한·인니 CEPA 상세설명자료

2020.1

관계부처 합동

목 차

1. 서문, 일반규정	3
2. 내국민 대우 및 상품시장접근	5
3.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25
4.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33
5. 무역구제	35
6. 서비스 무역	38
7. 투자	49
8. 경제협력	59
9. 투명성	61
10. 분쟁해결	62
11. 예외	65
12. 제도규정	67
13. 최종규정	69

서문 주요 내용

- 서문은 협정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대한 선언적 내용 포함
 - 양국의 긴밀한 관계, 시장·투자환경 창출, 각국의 발전단계 고려, 무역·투자 장벽 제거, 지속가능한 발전, WTO상 권리·의무 존중 등

일반규정 주요 내용

- 일반적 정의 : 협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용어의 정의 규정
 - 관세(customs duties)의 정의
 - 모든 관세 또는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
 -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
 - ※ 관세에서 제외되는 항목
 - ①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 ② 제5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 ③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 ④ 수입수량 제한 또는 관세율 할당의 운영에 관한 모든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또는
 - ⑤ 세계무역기구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행하여진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 국민(national)의 정의

- 한국 : 「국적법」상 대한민국의 국민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법 12/2006 상 인도네시아 국민

○ 영역(territory)의 정의

한 국	인 도 네 시 아
1) 한국 주권 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2)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1) 영토, 내수, 군도수역,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영토 및 영해 위의 상공 2) 인도네시아 법에 정의되고 1982년 12월 10일 몬테고베이에서 채택된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주권, 구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 자유무역지대 창설, 목적, 다른 협정과의 관계 등 규정

○ 목적

- 양 당사국간 상품 및 서비스무역을 실질적으로 자유화(GATT 제24조, GATS 제5조)
-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투자 기회 증대
- 양 당사국 간의 경제관계에 관련된 경쟁을 증진
- 협정의 이행과 활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력과 역량 강화를 위한 틀을 수립
- 양 당사국의 국제 무역을 발전시키는 것

- 다른 협정과의 관계 : WTO협정과 당사국들이 당사자인 그 밖의 협정상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협정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당사국간 협의를 규정

2

내국민대우 및 상품시장접근

개요

- 내국민 대우,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상품의 일시 반입 면세 등 상품 시장접근 관련 원칙과 의무사항은 협정문 본문에 규정하고, 품목별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위한 양허유형은 부속서에 규정
- 수량제한, 수입허가, 수출입수수료,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등 상품무역 비관세조치 관련 원칙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비관세조치에 관한 기술협약의 절차 도입

상품 협정문

1. 내국민 대우 (제2.3조)

- 199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당사국 상품에 내국민 대우 부여

2.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2.4조)

- 부속서 2-가의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
 -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품목별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를 위해 협의할 의무
- 부속서 2-가의 양허표에 따른 관세율보다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른 최혜국 실행관세율이 낮을 경우 최혜국 실행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각 당사국은 자국 최혜국 세율 개정사항을 인터넷에 공개

3. 일시 반입 상품 및 견본품에 대한 면세 (제2.6조, 2.7조)

- 상품의 사용에 따른 통상적인 감가상각 및 소모를 제외한 어떠한 변화도 거치지 아니하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명시된 기간 내 재수출될 의도로 일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완전 또는 부분적 조건부 면세 반입 허용 (제2.6조)
-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품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 (제2.7조)

4. 상품무역 관련 비관세조치의 적용 (제2.8조)

- 세계무역기구상의 권리 및 의무 또는 이 협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대해 비관세조치 채택 또는 유지 금지
-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어떠한 조치도 준비, 채택,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

5. 수량제한 철폐 (제2.9조)

- 세계무역기구상의 권리 및 의무 또는 이 협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 상품에 대하여 수출입 수량제한 금지
- 1994년도 GATT 제11조제2항가호에 따른 수출 금지나 제한을 채택하는 경우 상대국이 요청 시 관련 정보 및 협의 기회 제공

※1994년도 GATT 제11조제2항가호: 식품 또는 수출국에 불가결한 그 밖의 상품의 중대한 부족을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수출의 금지 또는 제한

6. 비관세조치에 대한 기술협약 (제2.10조)

- 당사국은 자국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조치에 대해 분쟁해결절차와 별개로 다른 쪽 당사국에 기술협약 요청 가능
 - 180일 이내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요청 받은 후 60일 이내 응답 및 기술협약 시작
 - ※ 긴급하거나 부패성 상품과 관련될 경우 60일보다 짧은 기간 내 기술협약 실시 요청 가능

7. 수입 허가 (제2.11조)

- 세계무역기구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에 따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고, 협정 발효 후 신속하게 기존의 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
- 가급적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21일 전 정부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 공표
 - 수입허가의 기준에 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합리적인 질의에 대해 가급적 60일 이내 답변
- 수입허가 신청 거부 시,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 합리적 기간 내 그 이유 설명
 - 사소한 서류상의 오류를 이유로 허가신청 거부 금지

8. 수출입 수수료 및 형식 (제2.12조)

- 수출입 수수료 및 부과금의 세부사항을 즉시 공표하고 인터넷에 공개, 수입 관련 영사거래 요구 금지 등 의무 규정

9.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2.13조)

-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상의 권리와 의무 재확인
 -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는 이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 위생 및 식물위생 분야에서의 기술협력과 소통 장려

10.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2.14조)

- 세계무역기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상의 권리와 의무 재확인
- 당사국 간 상호이해 제고 및 시장접근 원활화를 위하여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협력 강화

11. 상품무역위원회 (제2.1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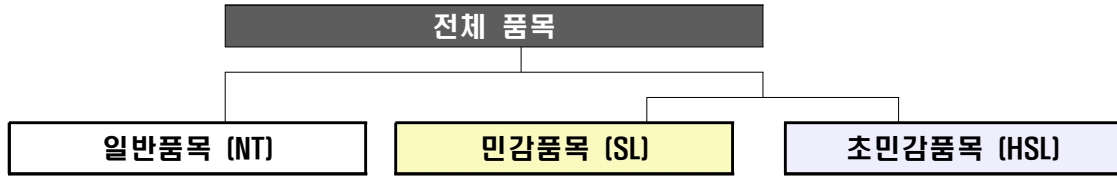
-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과 제5장(무역구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상품무역위원회 설치
- 상품무역위원회의 기능은 ▲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가속화 협의 등 당사국 간 상품무역 증진, ▲ 비관세조치 등 상품무역 장벽에 대한 검토, ▲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개정에 따른 양허표 최신화 조치 등을 포함

상품 양허 상세 내용

- 한-인도네시아 CEPA는 양국간 기발효 중인 한-아세안 FTA(2007.6월 발효)를 토대로 협상을 진행
 - 한-인도네시아 양국간에는 한-아세안 FTA를 통하여 ①품목수 기준 (한) 90.2% - (인) 80.1%, ②수입액 기준 (한) 93.6% - (인) 88.5%의 자유화 기 달성
 - 한-인도네시아 CEPA는 한-아세안 FTA상 ①관세철폐 대상이었으나 실제로 철폐되지 않은 상호주의 품목 및 ②관세철폐 대상이 아닌 민감·초민감품목(관세감축, TRQ 또는 양허제외 품목)을 대상으로 협상을 추진하여 추가 자유화를 달성
 - 협상대상: (한) 1,200개(6.7억불) - (인) 2,152개(9.9억불)
 - ※ 상호주의 품목 : (한) 98개(9백만불) - (인) 793개(1.7억불)
(인니가 한-아세안 FTA상 특정품목(예: 새우 등 우리 민감품목) 관세철폐에 합의했다라도 우리가 同 품목을 미철폐한 경우 한국산에 대해 관세부과하는 제도)
 - 추가자유화: (한) 품 90.2% 수 93.6% → 품 95.5% 수 97.3%
(인) 품 80.1% 수 88.5% → 품 93.0% 수 97.0%
 - ※ 면세제도 제도 제외시 인도네시아는 품 92.0% 수 94.0%
(특정용도(자동차, 전기·전자기기, 건설기계, 에너지산업 등)로 수입된 품목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시 즉시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한-인도네시아 FTA을 통해 수출과 투자의 선순환 유도, 인도네시아 시장내 우리 기업들의 경쟁조건 개선,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을 통해 양국간 경제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

한-아세안 FTA상 양국의 관세철폐 스케줄

□ 한-아세안 FTA 상품 양허 구성



□ 일반 품목

- 우리 : 2010년에 관세철폐 완료(2010.1.1일 기준 무관세)
- 인도네시아 : 2012년에 관세철폐 완료(2012.1.1일 기준 무관세)

□ 민감 품목

SL	민감품목군 상한선	양허내용
우리	모든 관세품목의 10%, 그리고 2004년도 총수입액의 10%	2012.1.1일까지 20%로 인하 2016.1.1일까지 0~5%로 인하
인도 네시아	모든 관세품목의 10%, 그리고 2004년도 총수입액의 10%	2012.1.1일까지 20%로 인하 2016.1.1일까지 0~5%로 인하

□ 초민감 품목

HSL	초민감품목군 상한선	양허내용
우리	HS 6단위 200개 혹은 당사국이 선택한 HS단위의 모든 관세품목 수의 3%, 그리고 총수입액의 3%	A: 2016.1.1까지 관세율을 50%(절대값)로 인하
		B: 2016.1.1까지 2005년 MFN 관세율에서 20% 이상 감축
		C: 2016.1.1까지 2005년 MFN 관세율에서 50% 이상 감축
		D: TRQ
		E: 양허 제외
인도 네시아	HS 6단위 200개 혹은 당사국이 선택한 HS단위의 모든 관세품목 수의 3%, 그리고 총수입액의 3%	A: 2016.1.1까지 관세율을 50%(절대값)로 인하
		B: 2016.1.1까지 2005년 MFN 관세율에서 20% 이상 감축
		C: 2016.1.1까지 2005년 MFN 관세율에서 50% 이상 감축
		D: TRQ
		E: 양허 제외

한-아세안 FTA 상호주의 제도

- (상호주의 제도(Reciprocal Arrangement)) 수출국의 민감품목에 대해 수입국이 해당품목을 일반 품목으로 양허했더라도 한-아세안 FTA에 따른 양허 관세 혜택에서 배제 가능
 - 인도네시아가 한-아세안 FTA상 특정품목(예: 새우 등 우리 민감품목) 관세철폐에 합의했더라도 우리가 同 품목을 미철폐한 경우 한국산에 대해 관세부과하는 제도
 -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3차 개정의정서('16년 발효)에 따라 아세안 6개국과는 동 제도를 폐지한 바, 현재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4개국과만 적용 중
- (적용품목 현황)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98개 품목(9백만불)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793개(1.7억불)을 적용 중
 - 우리측 對인도네시아 적용 현황

분류	품목수	수입액(불)	주요품목
공산품	86개	9,012,110	이륜차, 승용차, 화물차, 자동차부품 등
농산물	4개	47	원당, 기타주류
수산물	8개	114,551	한천, 새우, 바닷가재, 수산부산물 등
임산물	-	-	-
합계	98개	9,126,707	

- 인도네시아측 對한국 적용 현황

분류	품목수	수입액(불)	주요품목
공산품	149개	142,617,543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터사, 기타합성수지 등
농산물	450개	17,913,315	곡분(옥수수), 인삼류, 된장, 배 등
수산물	173개	3,048,856	김, 기타어류, 어류통조림, 기타수산가공품 등
임산물	21개	2,192,993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기타목재류 등
합계	793개	165,772,706	

한-인도네시아 CEPA 특정용도 면세제도

- (특정용도 면세제도, User Specific Duty-free Scheme) 특정한 용도로 수입된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규격, 등급, 국내 생산여부 등)을 만족시 즉시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① 자동차·모터사이클 및 그 구성품, ② 전기 및 전자제품, ③ 건설기계 및 중장비, ④ 석유, 가스 및 전력 등 4개 용도
 - 그간 한-아세안 FTA상 양허 제외된 우리 고급 철강제품 중 특히 자동차용 강판(냉연, 열연, 도금강판), 전자제품 소재 강판(도금강판) 등 총 104개(2.5억불) 품목이 한-인도네시아 CEPA상 특정용도 면세제도를 활용하여 즉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한-인도네시아 CEPA 전체 상품 양허 수준 비교 >

구분	한국				인도네시아			
	품목수(개)		'17-'18년 對인니수입액 평균(불)		품목수(개)		'17-'18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전체	12,232		10,365,549,951		10,813		8,605,051,518	
한-아세안 FTA	11,032	90.2%	9,697,835,038	93.6%	8,661	80.1%	7,619,434,046	88.5%
즉시 철폐	235	1.9%	73,485,399	0.7%	782	7.2%	414,340,321	4.8%
(면세제도)	-	-	-	-	104	1.0%	254,694,058	3.0%
3년 철폐	93	0.8%	217,498,461	2.1%	28	0.3%	11,180,088	0.1%
5년 철폐	50	0.4%	9,641,858	0.1%	69	0.6%	22,355,542	0.3%
7년 철폐	10	0.1%	45,730	0.0%	86	0.8%	43,176,796	0.5%
10년 철폐	231	1.9%	86,478,250	0.8%	309	2.9%	182,248,060	2.1%
15년 철폐	20	0.2%	2,424,413	0.0%	105	1.0%	50,766,653	0.6%
20년 철폐	16	0.1%	1,728,011	0.0%	18	0.2%	328,653	0.0%
소계	655	5.4%	391,302,121	3.8%	1,397	12.9%	724,396,112	8.4%
총합계	11,687	95.5%	10,089,137,159	97.3%	10,058	93.0%	8,343,830,158	97.0%

* 품목수 기준 : (한국) HSK 2018 (인도네시아) HSI 2018

* 수입액 기준 : 양측 모두 '17-'18년 평균

< 한-인도네시아 CEPA 상품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

우리 양허		양허 단계	인도네시아 양허	
주요 품목	품목 수		품목 수	주요 품목
승용차(8%), 화물자동차(10%), 자동차부품(8%), 자전거(5%), 자전거부품(5%), 판유리(5%), 선박용부품(5%), 의류(5%), 정밀화학원료(5%), 농약(2%), 석유제품(3-5%), 원당(3%), 유채유(5%), 한천(5%), 발효유(5%), 바닷가재(5%) 등	235	즉시 철폐	678	자동차부품(5%), 자전거부품(8%), 베어링(5%), 원동기(5%), 철도차량부품(5%), 기타철강제품(5-10%), 철강선(5-12.5%), 철강관(5%), 기타플라스틱제품(5%), 필름류(5%), 플라스틱관(5%), 에틸렌초산비닐(5%), 면사(5%), 감(5%), 사과(5%), 배(5%), 바나나(5%), 포도(5%), 람부탄(5%), 살라카(5%), 양파(5%), 우유(5%), 꿀(5%), 과일주스(10%) 등
			104	(면세제도)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철강선(5-12.5%), 선재(5%), 중후판(5%), 봉강(5%)
동선(5%), 위생용기(5%), 기타고무제품(5%), 폴리amide수지(5%), 기타석유화학제품(5%), 비누(5%), 세안용품(5%), 질소비료(2-5%), 석유제품(3-5%), 곡류가공품(5%), 치즈(5%), 골분(5%) 등	93	3년 철폐	28	농기계(5%), 동선(5%), 주철(5%), 철강재용기(2.5-5%), 주철관(8%), 형강(5%), 이염화에탄(5%), 딸기(5%) 등
저밀도에틸렌(5%), 브랜드(5%), 위스키(5%), 맥주(15%), 과일주스(5%), 고추장(5%), 비스킷(5%), 곡류가공품(6.4%), 면류(5%), 기타당류(5%), 전복(조제)(5%), 대두유(5%), 토란(냉동)(5%) 등	50	5년 철폐	69	고압케이블(8%), 가열난방기(5%), 자동차부품(5%), 기계요소(8%), 철강재체인(5-10%), 철강관(5-15%), 판유리(5%), 타일(5-8%), 제트유(5%), 기타요업제품(5%) 등
제재목(5%), 간장(5%), 갑오징어(조제)(5%), 복어(냉동)(5%), 정어리(냉동)(5%) 등	10	7년 철폐	86	TV카메라(5%), 음향기기(5%), 액체폼프(5%), 기타철강제품(10%), 철구조물(8%), 철강관(5-15%), 남성셔츠(5%), 브라우스(5%), 스위터(5%), 면류(20%), 간장(8%), 리치(5%), 라임(5%), 레몬(5%), 파인애플(5%), 구아바(5%) 등
베어링(5%), 폴리에스터사(5%), 합판(5-10%), 섬유판(5-8%), 제재목, 기타석유화학제품(5%), 과일주스(5-40%), 어류통조림(20%), 열대과일(두리안, 파파야, 망고스틴, 구아바 등)(24-36%), 복어(10%), 메기(20%), 해파리(냉동)(5%) 등	231	10년 철폐	309	자동차부품(5%), 모터사이클(5-19%), 자전거(8%), 친환경차(5%), 승용차(5%), 화물자동차(5%), 선박용엔진(5%), 원동기(5%), 철강관(5-15%), 형강(5%), 철강선(5-12.5%), 철근(6.4%), 열연강판(5%), 중후판(3.2), 도금강판(5-15%), 냉연강판(5-15%), 감(5%), 계(5%), 녹차(5%), 등
보조사료(40%), 된장(5%), 바나나(플랜틴)(30%), 살라카(36%), 유장(5%) 등	20	15년 철폐	105	화물자동차(5%), TV(5%), 비디오튜너(5%), 냉장고(5%), 철강재용기(10%), 철강관(5-15%), 도금강판(5-15%), 섬유사(5%), 명태(5%), 대구(5%) 등
인삼음료(5%), 밤(냉동)(24%), 감(건조)(40%), 살구(조제)(5%), 육즙(24%) 등	16	20년 철폐	18	카사바전분(10%), 칠리고추(건조)(5%), 망고(20%), 오렌지(5%), 계(5%), 기타수산가공품(5%) 등,
참치(5%), 어류통조림(5%), 티라피아(10%), 문어(조제)(5%), 기타농산가공품(20%) 등	12	25% 감축 (10년 내)	-	
	667	총합계	1,397	

< 한-인도네시아 양국 상품 양허 최종 수준 비교(RCEP 반영시) >

※ 품목수 기준 : HS 2017 / 수입액 기준 : '17-'18년 평균

구분	한국				인도네시아			
	품목수(개)		'17-'18년 對인니수입액 평균(불)		품목수(개)		'17-'18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전체	12,232		10,365,549,951		10,813		8,605,051,518	
한-아세안 FTA	11,032	90.2%	9,697,835,038	93.6%	8,661	80.1%	7,619,434,046	88.5%
RCEP	493	4.0%	267,680,609	2.6%	1,229	11.4%	307,382,781	3.6%
한-아세안 FTA + RCEP*	11,525	94.2%	9,965,515,647	96.1%	9,890	91.5%	7,926,816,827	92.1%
즉시 철폐	58	0.5%	16,655,224	0.2%	116	1.1%	265,035,352	3.1%
(면세제도)	-	-	-	-	104	1.0%	254,694,058	3.0%
3년 철폐	73	0.6%	52,477,836	0.5%	-	-	-	-
5년 철폐	18	0.1%	1,570,828	0.0%	28	0.3%	19,405,403	0.2%
7년 철폐	8	0.1%	18,096	0.0%	50	0.5%	24,660,698	0.3%
10년 철폐	24	0.2%	57,856,993	0.6%	116	1.1%	153,545,722	1.8%
15년 철폐	6	0.0%	2,327,560	0.0%	43	0.4%	5,075,646	0.1%
20년 철폐	4	0.0%	0	0.0%	8	0.1%	120	0.0%
소계	191	1.6%	130,906,535	1.3%	361	3.3%	467,722,940	5.4%
총합계 (한-아세안+RCEP +한-인니 CEPA)	11,716	95.8%	10,096,422,182	97.4%	10,251	94.8%	8,394,539,766	97.6%

* (참고) RCEP 협상기준(품목수 HS 2014 / 수입액 '12-'13년 평균)으로 계산시
(한국) 품목수 94.6% 수입액 98.6% / (인니) 품목수 93.6% 수입액 89.7%

분야별 세부 상품양허

1. 공산품 (임산물 포함)

- 우리는 한-인도네시아 CEPA를 통해 한-아세안 FTA에서 관세철폐* 되지 않고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326개 공산품 중 314개**에 대해 추가 시장 개방 (모두 10년내 관세철폐)
 - 우리의 對인도네시아 공산품 수입은 그간 미개방된 품목 중에서는 석유제품(유탄유 등), 화학제품(범용), 의류에 집중되어 있고, 여타 품목도 인도네시아의 경쟁력이 높지 않아, 한-인도네시아 CEPA로 인한 실질적 추가 개방효과는 제한적
 - * 한-아세안 FTA에서 공산품 대다수(품목수 96.6% 수입액 96.2%)를 이미 관세 철폐 완료(2010년)
 - ** 전통 민감품목인 면사 12개 품목은 양허제외
 - 다만 목재류 등 임산물의 경우 對인도네시아 수입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바, 對인도네시아 수입액이 큰 합판, 섬유판, 제재목 등 목재류 주요 민감품목 58개에 대해서는 기준세율 유지(1개) 또는 양허제외 (57개)하여 국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
 - * 기준세율 유지 품목은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기준세율이 계속 유지, 양허제외 품목은 관세철폐 및 관세와 관련된 모든 의무의 적용 제외
-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 FTA에서 상대적으로 개방도가 낮았던 주요 공산품에 대해 한-인도네시아 CEPA를 통해 추가 시장 개방
 - 對인도네시아 수출 공략 품목으로서 철강제품, 자동차·부품, 석유 화학제품, 섬유 등에서 인도네시아로부터 관세철폐 또는 면세제도를 확보한 바, 큰 잠재력을 가진 인니 내수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
 - (철강제품) 우리측 '17-'18년 對인니 수출 약 9.9억불(전체 수출액 86억불의 11.5% 해당)인 품목으로, 냉연강판, 도금강판, 열연강판,

철강관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 상당수에 대해 부과되던 5-15% 관세를 철폐한 바, 향후 수출 지속 증가 기대

* 강판류(5-15%, 면세제도 및 10-15년 철폐), 철강관(5-15%, 즉시-15년철폐) 등

- (자동차·부품) 일부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관세철폐를 확보했으며, 특히 부품 중 핵심품목들(트랜스미션, 선루프 등)에 대해서는 즉시철폐를 얻은 바, 향후 우리 관련 기업의 對인니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 자동차(5%, 10-15년철폐), 자동차부품(5%, 즉시-10년철폐)

- (석유화학) 거대 인구에 기반한 주요 소비재 시장 규모가 상당한 바, 합성수지, 플라스틱제품(관류, 용기류, 가방, 상자 등) 등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의 수출 증가 기대

* 합성수지(5%, 즉시-15년철폐), 플라스틱제품(5%, 즉시-15년철폐)

- (섬유) 인니측의 의류수출 확대에 따라 한국산 소재에 대한 수요가 있는 바, 관련 소재(면사, 폴리에스터사, 인조장섬유사 등)를 생산하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 기대

* 면사(5%, 즉시철폐), 폴리에스터사(5%, 15년철폐), 인조장섬유사(5%, 즉시철폐)

< 한-인도네시아 CEPA 공산품 (임산물 포함) 양허 수준 비교 >

구분	한국				인도네시아			
	품목수(개)		'17-'18년 對인니수입액 평균(불)		품목수(개)		'17-'18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한-아세안 FTA	9,478	95.5%	9,113,131,368	93.7%	7,605	84.4%	7,492,232,319	88.7%
즉시 철폐	220	2.2%	73,434,742	0.8%	415	4.6%	408,875,598	4.8%
(면세제도)	-	-	-	-	104	1.2%	254,694,058	3.0%
3년 철폐	83	0.8%	217,498,461	2.2%	27	0.3%	10,643,972	0.1%
5년 철폐	3	0.0%	191,727	0.0%	67	0.7%	21,580,956	0.3%
(5년 이내)	306	3.1%	291,124,929	3.0%	509	5.6%	441,100,526	5.2%
7년 철폐	2	0.0%	27,635	0.0%	69	0.8%	42,486,696	0.5%
10년 철폐	71	0.7%	80,584,515	0.8%	246	2.7%	173,517,100	2.1%
(10년 이내)	379	3.8%	371,737,078	3.8%	824	9.1%	657,104,322	7.8%
15년 철폐	-	-	-	-	75	0.8%	50,606,422	0.6%
철폐 소계	379	3.8%	371,737,078	3.8%	899	10.0%	707,710,744	8.4%
기준세율 유지	1	0.0%	0	0.0%	15	0.2%	2,191,189	0.0%
양허 제외	69	0.7%	236,225,380	2.4%	495	5.5%	248,388,387	2.9%
합계	9,927	100.0%	9,721,093,825	100.0%	9,014	100.0%	8,450,522,637	100.0%

* 품목수 기준 : (한국) HSK 2018 (인도네시아) HSI 2018

* 수입액 기준 : 양측 모두 '17-'18년 평균

< 한-인도네시아 CEPA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유형별 주요품목 >

우리 양허		양허 단계	인도네시아 양허	
주요 품목	품목 수		품목 수	주요 품목
승용차, 화물자동차, 자동차부품, 이륜차부품, 이륜차, 경작기계, 건전지, 선박용엔진및그 부품, 기타타일및도자기제품, 타일, 편직제의류, 직물제의류, 기타인조섬유장섬유사, 폴리에스터사, 순면직물, 방모직물, 모사, 사진영화용재료, 의약품, 농약, 기타정밀화학원료, 기타석유화학제품, 윤활유, 중유, 기타석유제품, 시멘트 등	220	즉시 철폐	311	자동차부품(기어박스, 클러치, 휠, 브레이크, 페달, 선루프, 트랜스미션 등), 자전거부품, 베어링, 세탁기, 철도차량부품, 원동기, 섬유기계, 주철, 기타철강제품, 기타기계요소, 철강선, 철강재용기, 철강관, 귀금속 장식품, 가발, 조화, 장갑, 손수건 스카프, 편직제의류, 직물제의류, 기타인조섬유장섬유사, 면사, 방모직물, 모사, 합성고무, 기타플라스틱제품, 필름류, 플라스틱관, 플라스틱갈개, 합성수지, 기타정밀화학제품, 비누, 기타정밀화학원료, 석유화학중간원료, 제트유, 합판, 섬유판 등
			104	(면세제도)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철강선, 선재, 중후판, 봉강, 아연도강판, 석도강판 등
동조가공품, 위생용기, 타일, 기타고무제품, 합성고무, 합성수지, 기타석유화학제품, 기타정밀화학원료, 석유화학중간원료, 수산화나트륨, 윤활유, 경유, 기타석유제품, 제트유및등유, 휘발유, 시멘트 등	83	3년 철폐	27	기타농기계, 동조가공품, 주단강, 주철, 기타철강제품, 철강재용기, 주철관, 형강 석유화학중간원료 등
합성수지, 기타정밀화학원료	3	5년 철폐	67	고압케이블, 섬유기계, 기타주철, 주단강, 가열난방기, 가열기구, 자동차부품, 기계요소, 못, 철강재체인, 주철, 철강관, 판유리, 위생용기, 타일, 기타요업제품, 플라스틱관, 제트유 등
제재목(열대산)	2	7년 철폐	69	TV카메라, 음향기기, 컴포넌트, 액체펌프, 철도차량부품, 볼트및너트, 기타철강제품, 철구조물, 철탑, 철강관, 철강선, 열연강판, 직물제의류, 편직제의류, 기타정밀화학제품 등
베어링, 폴리에스터사, 합성수지, 기타정밀화학제품, 기타석유화학제품,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제재목(열대산, 기타, 침엽수) 등	71	10년 철폐	246	이륜차부품, 자전거, 이륜차, 자동차부품, 승용차, 화물자동차, 선박용엔진, 원동기, 철강관, 가열난방기, 철근, 봉강, 선재, 열연강판, 중후판, 석도강판, 보석, 직물제의류, 편직제의류, 기타플라스틱제품, 비누, 기타정밀화학원료, 기타석유화학제품, 석유화학중간원료, 기타정밀화학원료, 건축용목제품 등
-	-	15년 철폐	75	이륜차, 화물자동차, TV, 비디오튜너, 수상기, 냉장고, 기타주철, 기타철강제품, 철강재용기, 가열기구, 기타기계요소, 철강관, 아연도강판, 직물제의류, 폴리에스터사, 기타플라스틱제품, 합성수지, 기타정밀화학제품
	379	총합계	899	

< 한-인도네시아 CEPA 주요 수출입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 비교 >

순위	우리 양허 (對인도네시아 주요 수입품)				인도네시아 양허 (對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천불)	우리 양허	품목명 (HS 8단위)	관세율 (%)	수출(천불)	인니 양허
1	윤활유 기유	5	156,917	3년 철폐	열연강판(기타)	5	126,201	10년 철폐
2	합판(기타)	5	114,742	양허 제외	저밀도에틸렌 (에틸렌초산비닐)	5	30,890	즉시 철폐
3	기타정밀화학제품 (스테아린산)	5	47,137	10년 철폐	열연강판(기타)	5	27,299	면세 제도
4	기타정밀화학제품 (라우릴 알코올)	3	39,265	3년 철폐	열연강판 (두께가 3-4.75mm인 것)	5	26,642	면세 제도
5	합판(기타)	5	21,913	양허 제외	저밀도에틸렌 (기타)	5	26,588	양허 제외
6	합판 (두께가 4-6mm인 것)	5	19,268	양허 제외	냉연강판(기타)	4.8	25,041	면세 제도
7	편직제의류 (언더셔츠)	5	17,056	즉시 철폐	승용차(기타)	5	22,776	양허 제외
8	합판 (기타)	5	15,413	양허 제외	아연도강판 (페인팅한 것)	8	18,098	면세 제도
9	합판 (적어도 한쪽 외면 플라이가 열대산목재인 것)	8	12,303	양허 제외	아연도강판 (기타)	8	17,092	면세 제도
10	합판 (두께가 10-12mm인 것)	5	9,170	양허 제외	폴리카보네이트	5	16,455	즉시 철폐
	(10대 수입소계)		453,184		(10대 수출소계)		337,081	
	공/임산물 수입합계 (일반품목 포함)		9,721,094		공/임산물 수출합계 (일반품목 포함)		8,450,523	

* 대상 : 한-아세안 FTA 유관세 품목

* 품목수 기준 : (한국) HSK 2018 (인도네시아) HSI 2018 / 수입액 기준 : 양측 모두 '17-'18년 평균

* 관세율 : 기준세율을 의미

2. 농산물

□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 FTA를 통해 전체 농산물(1,343개) 중 품목수 기준 59.8%(803개), 수입액 기준 82.8%(1.2억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해왔음

○ 인도네시아는 한-인도네시아 CEPA에서 품목수 기준 26.4%(355개), 수입액 기준 10.0%(0.1억불)을 추가로 관세철폐하여 품목수 기준 86.2%(1,158개), 수입액 기준 92.8%(1.3억불)에 대하여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철폐하게 되는 바, 우리의 수출 관심품목인 사과·배·감은 즉시철폐, 딸기는 3년 철폐, 커피음료는 10년 철폐하여 우리 농산물의 對인도네시아 수출 경쟁력 확보 계기 마련

* 쌀, 곡류가공품, 당류, 주류, 화초류 등 185개 품목은 양허 제외

* 對 인니 수출('17-'18 평균) : 사과 6만\$, 배 112만\$, 딸기 53만\$, 커피음료 812만\$ 등

□ 우리는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한-아세안 FTA 민감품목(SL) 위주로 추가 개방하여 농산물 분야 부담 최소화

○ 한-아세안 FTA 유관세 품목 537개 중 상호주의 적용품목 4개, 민감품목(SL) 99개, 초민감품목(HSL) 43개 등 146개를 관세철폐(144개) 또는 관세감축(10년내 25% 감축)(2개)으로 추가 개방했으며, 그 외 품목 391개는 기준세율 유지(36개) 또는 양허제외(355개)

* 기준세율 유지 품목은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기준세율이 계속 유지, 양허제외 품목은 관세철폐 및 관세와 관련된 모든 의무의 적용 제외

【식량작물】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은 한-아세안에서와 동일하게 양허제외로 보호

○ 고구마(신선·건조·냉장, 308%), 대두(사료용·콩나물용 등, 389.6%), 팥(종자용·기타, 336.6%) 등은 기준세율 동결 또는 양허제외

【축산물 및 낙농품】 대부분 양허제외

○ 육류가공품(핫도그, 24%) 10년 철폐, 유장(사료용, 5%) 15년 철폐, 기타축산조제품(5%)·육즙(24%) 20년 철폐 등 개방된 품목도 대

부분 장기 철폐

【과실류】 사과(45%), 배(45%) 등 국내 생산되는 주요 과일은 양허제외

- 플랜틴(30%)·살라카(36%) 15년 철폐, 두리안(36%)·파파야(24%)·구아바(24%)·망고스틴(24%) 10년 철폐 등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입액이 없는 기타 열대과일도 대부분 장기철폐

【채소·특작류】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등 양념채소류 및 인삼(178.2-603.4%), 버섯(5%) 등 대부분 양허제외

- 호박(5%)과 스위트콘(5%)은 5년 철폐, 기타채소(0-5%)는 10년내 현재 세율 대비 25% 관세감축

【가공식품】 김치(16%), 혼합조미료(36%)는 양허제외

- 소스류의 경우, 춘장(5%)·고추장(5%) 5년 철폐, 간장(5%) 7년 철폐, 된장(5%) 15년 철폐했으며, 맥주(15%), 위스키(5%), 보드카(5%) 등 주류는 대부분 5년 철폐

< 한-인도네시아 CEPA 농산물 양허 수준 비교 >

구분	한국				인도네시아			
	품목수(개)		'17-'18년 對인니수입액 평균(불)		품목수(개)		'17-'18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한-아세안 FTA	1,086	66.9%	539,996,912	93.3%	803	59.8%	115,969,252	82.8%
즉시 철폐	6	0.4%	152	0.0%	276	20.6%	3,709,458	2.6%
3년 철폐	10	0.6%	0	0.0%	1	0.1%	536,116	0.4%
5년 철폐	45	2.8%	9,450,132	1.6%	2	0.1%	774,586	0.6%
(5년 이내)	61	3.8%	9,450,284	1.6%	279	20.8%	5,020,160	3.6%
7년 철폐	1	0.1%	18,096	0.0%	15	1.1%	690,100	0.5%
10년 철폐	46	2.8%	5,669,257	1.0%	37	2.8%	8,228,345	5.9%
(10년 이내)	108	6.7%	15,137,636	2.6%	331	24.6%	13,938,604	10.0%
15년 철폐	20	1.2%	2,424,413	0.4%	19	1.4%	56,140	0.0%
20년 철폐	16	1.0%	1,728,011	0.3%	5	0.4%	120	0.0%
철폐 소계	144	8.9%	19,290,059	3.3%	355	26.4%	13,994,863	10.0%
관세 감축	2	0.1%	32,941	0.0%	-	-	-	-
기준세율 유지	36	2.2%	0	0.0%	-	-	-	-
양허 제외	355	21.9%	19,309,537	3.3%	185	13.8%	10,050,410	7.2%
합계	1,623	100.0%	578,629,449	100.0%	1,343	100.0%	140,014,524	100.0%

* 품목수 기준 : (한국) HSK 2018 (인도네시아) HSI 2018

* 수입액 기준 : 양측 모두 '17-'18년 평균

< 한-인도네시아 CEPA 농산물 양허유형별 주요 품목 >

우리 양허		양허 단계	인도네시아 양허	
주요 품목	품목 수		품목 수	주요 품목
곡류가공품, 유아용조제식료품, 원당(사탕수수당), 원당(사탕무당), 기타식물성유지(유채유), 발효유	6	즉시 철폐	276	기타식물성유지, 견과류, 음료베이스, 과일주스, 소, 땅콩, 밤, 기타채소, 감자, 빵, 면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초코렛, 꿀, 기타식물성유지, 들기름, 참기름, 들깨, 참깨, 곡분(기타곡분, 밀가루, 보리가루, 쌀가루 등), 감, 사과, 버찌, 밤, 딸기, 배, 포도, 바나나, 고구마, 타피오카, 난류, 치즈, 버터, 기타낙농품, 발효유, 우유 등
기타농산가공품, 곡류가공품, 당류(맥아당, 포도당), 기타식물성유지(미강유), 곡분, 꿀, 분, 치즈, 발효유	10	3년 철폐	1	딸기
주류(기타주, 브랜드, 리큐르, 보드카, 위스키, 포도증류주, 맥주 등) 과일주스, 기타농산가공품, 고추장, 춘장, 스위트콘, 비스킷, 곡류조제품, 면류(당면, 국수), 유아용조제식료품, 당류(과당, 카라멜당 등), 대두유, 기타식물성유지, 토란, 양, 호박 등	45	5년 철폐	2	소스류(기타), 곡류가공품
간장	1	7년 철폐	15	간장, 면류(기타), 곡분, 레몬, 라임, 오렌지(건조), 구아바, 파인애플 등
기타정밀화학원료, 기타농산가공품, 과일주스(파인애플, 레몬), 단일과실조제품, 맥아엑스, 육류가공품(핫도그), 두리안, 파파야, 레몬, 망고스틴, 구아바, 캐슈넛, 칩뿌리, 두류 등	46	10년 철폐	37	땅콩, 기타곡분, 사료, 생강, 고추, 녹차, 기타과실, 타피오카, 양, 강낭콩, 팥, 버섯, 양파, 양배추, 우유, 쇠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등
기타사료용조제품, 보조사료, 혼합조제식료품, 된장, 버찌, 밀전분, 플랜틴, 유장(변성유장, 유장분말 등), 살라카 등	20	15년 철폐	19	생강, 고추, 녹차, 마늘, 천연꿀, 우유, 쇠고기(위, 혀, 기타 등)
사료, 인삼음료, 기타낙농품, 과일주스, 크렌베리, 살구, 밤, 육즙, 기타과실 등	16	20년 철폐	5	오렌지, 고추, 망고, 소, 곡분 등
기타농산가공품(차, 마태 조제품), 기타채소	2	관세 감축	-	-
	146	총합계	355	

< 한-인도네시아 CEPA 주요 수출입 농산물 양허 비교 >

순 위	우리 양허 (對인도네시아 주요 수입품)				인도네시아 양허 (對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천불)	우리 양허	품목명 (HS 8단위)	관세율 (%)	수출(천불)	인니 양허
1	팜유(기타)	0	98,644	-	비낙농크리머	0	40,560	-
2	팜유 (팜 스테아린)	0	93,460	-	인스턴트면(기타)	0	16,626	-
3	야자유 (정제유)	0	77,070	-	사료(새우용)	0	14,894	-
4	팜넛유박 (팜 너트)	0	56,832	-	커피음료	5	8,218	10년 철폐
5	흡연용담배 (기타)	0	44,840	-	음료(기타)	0	5,553	-
6	기타식물성재료	0	34,378	-	연초류(기타)	0	5,276	-
7	박류(야자)	0	19,833	-	당류(정제당)	Rp 790/Kg	5,085	양허 제외
8	박류(밀기울)	0	13,847	-	음료(비탄산수)	0	4,620	-
9	커피	0	12,345	-	연초류(기타)	0	2,784	-
10	당류(당밀)	0	11,664	-	사료(프리믹스)	0	2,218	-
11	비스킷(스위트)	0	7,888	-	오리깃털	0	1,552	-
12	기타식물성유지	5	7,138	5년 철폐	곡분(기타)	0	1,499	-
13	기타과실	36	6,643	양허 제외	사료(기타)	0	1,402	-
14	베이커리반죽	513	6,077	양허 제외	버섯류 (아가리쿠스)	5	1,362	즉시 철폐
15	빵(와플)	0	5,273	-	음료(기타)	0	1,294	-
16	빵(기타)	0	4,563	-	식물성액즙(기타)	0	1,270	-
17	팜핵유	0	4,211	-	연초류(기타)	0	1,240	-
18	쇼트닝	0	3,501	-	곡분(옥수수)	10	1,201	양허 제외
19	방향성물질	0	3,237	-	배	5	1,121	즉시 철폐
20	캐슈넛	5	2,811	10년 철폐	버섯류(기타)	0	999	-
	(20대 수입소계)		514,254		(20대 수출소계)		118,774	
	농산물 수입합계		578,629		농산물 수출합계		140,015	

* 대상 : 한-아세안 FTA 일반품목을 포함한 전 품목

* 품목수 기준 : (한국) HSK 2018 (인도네시아) HSI 2018 / 수입액 기준 : 양측 모두 '17-'18년 평균

* 한-인도네시아 CEPA 양허 : “-”로 표기된 경우, 한-아세안 FTA에 따라 일반품목으로 분류되어 우리의 경우 2010년에,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2년에 관세철폐 완료

* 관세율 : 기준세율을 의미

3. 수산물

-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 FTA를 통해 전체 수산물(456개) 중 품목수 기준 55.5%(253개), 수입액 기준 77.4%(0.1억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해왔음
 - 인도네시아는 한-인도네시아 CEPA에서 품목수 기준 31.4%(143개), 수입액 기준 18.5%(2.7백만불)을 추가로 관세철폐하여 품목수 기준 86.8%(396개), 수입액 기준 95.9%(0.1억불)에 대하여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철폐하게 되는 바, 우리 수산물의 對인도네시아 수출 경쟁력 확보 계기 마련
 - * 어류통조림, 수산가공품, 새우 등 60개 품목은 기준세율 유지(22개) 또는 양허 제외(38개)
- 우리는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對인도네시아 수입액이 미미한 품목 위주로 추가 개방하여 수산물 분야 부담 최소화 도모
 - 한-아세안 FTA 유관세 품목 214개 중 상호주의 적용품목 8개, 민감품목(SL) 68개, 초민감품목(HSL) 66개 등 142개를 관세철폐(132개) 또는 관세감축(10개)으로 추가 개방
 - * 한-인도네시아 CEPA에서 품목수로는 19.4%(132개)을 추가 관세철폐 했으나, 수입액으로는 0.4%(0.3백만불)만 추가 관세철폐
 - 우리 주요 생산 어종인 조기(냉동), 명태(냉동), 넙치(활어), 갈치(냉동·신선·냉장) 및 수입액이 큰 전갱이(냉동), 오징어(냉동), 새우류 등 총 72개 품목은 양허 제외

< 한-인도네시아 CEPA 수산물 양허 수준 비교 >

구분	한국				인도네시아			
	품목수(개)		'17-'18년 對인니수입액 평균(불)		품목수(개)		'17-'18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한-아세안 FTA	468	68.6%	44,706,759	67.9%	253	55.5%	11,232,476	77.4%
즉시 철폐	9	1.3%	50,506	0.1%	91	20.0%	1,755,265	12.1%
3년 철폐	-	-	-	-	-	-	-	-
5년 철폐	2	0.3%	0	0.0%	-	-	-	-
(5년 이내)	11	1.6%	50,506	0.1%	91	20.0%	1,755,265	12.1%
7년 철폐	7	1.0%	0	0.0%	2	0.4%	0	0.0%
10년 철폐	114	16.7%	224,478	0.3%	26	5.7%	502,616	3.5%
(10년 이내)	132	19.4%	274,984	0.4%	119	26.1%	2,257,881	15.6%
15년 철폐	-	-	-	-	11	2.4%	104,092	0.7%
20년 철폐	-	-	-	-	13	2.9%	328,534	2.3%
철폐 소계	132	19.4%	274,984	0.4%	143	31.4%	2,690,506	18.5%
관세 감축	10	1.5%	1,977,848	3.0%	-	-	-	-
기준세율 유지	-	-	-	-	22	4.8%	233,025	1.6%
양허 제외	72	10.6%	18,867,088	28.7%	38	8.3%	358,351	2.5%
합계	682	100.0%	65,826,678	100.0%	456	100.0%	14,514,357	100.0%

* 품목수 기준 : (한국) HSK 2018 (인도네시아) HSI 2018

* 수입액 기준 : 양측 모두 '17-'18년 평균

< 한-인도네시아 CEPA 수산물 양허유형별 주요 품목 >

우리 양허		양허 단계	인도네시아 양허	
주요 품목	품목 수		품목 수	주요 품목
한천, 수산부산물, 바닷가재, 피조개, 농어(양식용 치어), 돔(양식용 치어), 실장어(활어)	9	즉시 철폐	91	수산물통조림(문어, 해파리 등), 김, 건조수산물, 기타조개, 새우, 꽃게, 기타수산가공품(상어지느러미), 대구, 참치 등
기타수산가공품(조제전복, 조제기타연체동물)	2	5년 철폐	-	
기타수산가공품(조제갑오징어, 상어지느러미, 생선묵 등), 복어(냉동), 정어리(냉동)	7	7년 철폐	2	기타수산가공품(기타), 참치
참치(활어, 냉동 등), 메기(신선, 냉장), 뱀장어(기타), 붕장어(활어), 갯장어(활어), 복어(활어), 멸치(신선, 냉장), 새우젓, 피조개(냉동), 바지락(냉동), 갑오징어(훈제), 김, 툃, 다시마, 어류통조림(참치)	114	10년 철폐	26	메기, 기타어류, 기타게, 오징어(기타), 기타조개(활어, 신선, 냉장), 건조수산물 등
-	-	15년 철폐	11	명태(냉동), 대구(냉동), 기타수산가공품(조제처리) 등
-	-	20년 철폐	13	기타연체동물(냉동), 기타조개(냉동), 오징어(냉동), 기타수산가공품, 건조수산물 등
기타수산가공품(조제문어 등), 기타조개(냉동), 참치(냉동), 킬라피아(냉동) 등	10	관세 감축	-	
	142	총합계	143	

< 한-인도네시아 CEPA 주요 수출입 수산물 양허 비교 >

순위	우리 양허 (對인도네시아 주요 수입품)				인도네시아 양허 (對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천불)	우리 양허	품목명 (HS 8단위)	관세율 (%)	수출(천불)	인니 양허
1	어육(냉동)	0	7,769	-	기타수산가공품 (기타)	0	8,260	-
2	기타해조류 (코토니)	0	7,303	-	기타수산가공품 (어류의 것)	0	1,763	-
3	전갱이(냉동)	10	6,841	양허 제외	김(기타)	5	1,354	즉시 철폐
4	기타수산가공품 (캐비아대용물)	0	5,875	-	건조수산물 (멸치)	5	473	10년 철폐
5	건조수산물 (기타어류)	0	5,271	-	수산부산물	0	318	-
6	꾸꾸미(냉동)	0	3,922	-	기타계	5	306	20년 철폐
7	낙지(냉동)	0	3,365	-	수산부산물	0	262	-
8	오징어(냉동)	21.6	2,663	양허 제외	기타수산가공품 (어류의 것)	0	248	-
9	새우살(기타)	20.0	2,135	양허 제외	기타수산가공품 (밀폐용기 포장)	5	140	양허 제외
10	기타수산가공품 (조제해삼)	0	1,716	-	김(기타)	5	110	즉시 철폐
11	기타해조류	16	1,700	관세 감축	해조류 (Gracilaria종)	5	110	즉시 철폐
12	밀크피쉬(냉동)	0	1,644	-	기타수산가공품 (생선페이스트)	5	96	양허 제외
13	어육(기타냉동)	0	1,601	-	해조류 (유케마스피노섬)	0	88	-
14	새우(냉동)	20	1,431	양허 제외	새우(기타)	5	79	기준 세율
15	기타갑각류	0	1,383	-	참치 (가다랑어)	5	78	기준 세율
16	새우(조제처리)	16	1,001	양허 제외	참치 (황다랑어)	5	76	기준 세율
17	기타어류(냉동)	10	909	양허 제외	기타어류 (태평양 고등어)	5	68	즉시 철폐
18	문어(냉동)	0	692	-	기타수산가공품 (생선소시지)	0	68	-
19	기타관상용활어	5-8	643	양허 제외	명태	5	67	15년 철폐
20	기타수산가공품 (생선묵)	5	627	양허 제외	기타수산가공품 (밀폐용기 미포장)	5	66	양허 제외
	(20대 수입소계)		58,492		(20대 수출소계)		14,031	
	수산물 수입합계		65,827		수산물 수출합계		14,514	

* 대상 : 한-아세안 FTA 일반품목을 포함한 전 품목
 * 품목수 기준 : (한국) HSK 2018 (인도네시아) HSI 2018 / 수입액 기준 : 양측 모두 '17-'18년 평균
 * 한-인도네시아 CEPA 양허 : "-"로 표기된 경우, 한-아세안 FTA에 따라 일반품목으로 분류되어 우리의 경우 2010년에,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2년에 관세철폐 완료
 * 관세율 : 기준세율을 의미

3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개요

- (원산지 규정)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상품에 대한 일반기준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Product Specific Rules) 규정
 - 원산지 기준으로 (i) 완전생산 기준, (ii) 원산지 재료생산기준, (iii) 실질적 변형기준(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기준)을 규정
 - 역내교역의 촉진을 위하여 원산지 판정 시, 최종 제품에 투입된 다른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의 누적을 허용하는 기준 등 포함
 -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에는 총 5,387개 세번(HS2017, 6단위)별로 비원산지 재료 사용시에도 원산지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 규정
 - 역외가공지역(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100개 품목(HS 6단위)에 대하여 한-인도네시아 CEPA 특혜관세 대우의 기회 마련
- (원산지 절차) 원산지 증명 방식, 특혜관세 신청 절차, 원산지 검증 방식 등에 대하여 규정
 - (증명 방식) 기관증명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자율증명은 순차적으로 도입(발효 후 인증수출자 2년 내, 수출자·생산자 원칙적 10년 내) 하도록 규정
 -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동 정보가 관세당국 간 교환되는 경우 관세당국은 수입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 요구 생략 가능
 - (검증 방식)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간접검증 방식을 도입하고, 필요시 수출국 방문검증이 가능 하도록 규정

상세내용

1. 원산지 기준 (제3.2조)

-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상품으로 다음을 규정
 - 수출 당사국에서 전적으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수출 당사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
 - 수출 당사국에서 전적으로 완전 획득·생산되지는 않았지만 품목별 원산지 기준(부속서 3-가)을 충족하는 상품

2. 완전생산 상품 (제3.3조)

- 당사국에서 전적으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을 규정
 - 당사국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및 식물성 제품
 - 당사국 영역에서 출생·사육된 산 동물 및 이로부터 획득된 상품
 - 당사국 영토·영해에서 수렵, 밧사냥, 어로, 양식으로 획득한 상품
 - 당사국 영역에서 추출하거나 채취한 광물 및 다른 천연 자원
 - 당사국 영해 밖 바다,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해당 당사국에 등록하고, 그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취득한 어로상품·해양생물
 - 당사국 영역 밖 해저 및 하부토양에서 국제법에 따라 개발의 권리를 갖는 당사국 및 그 당사국의 사람이 채취한 상품
 -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사람이 우주에서 취득한 상품
 -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부품 또는 원재료의 처분 및 재활용 목적에 적합한 물품
 - 당사국에서의 생산과정 또는 당사국에서 수집된 중고 상품에서 나온 폐기물 및 부스러기

3. 역내/인정가치포함비율 계산 (제3.4조)

□ 역내/인정가치포함비율(Regional/Qualifying Value Content)의 계산 방식으로 집적법(Build-up)과 공제법(Build-down) 규정

○ 집적법(Build-up): 원산지 재료가치를 누적하여 계산

$$\text{RVC 또는 Q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 공제법(Build-down): 비원산지 재료가치를 제외하여 계산

$$\text{RVC 또는 QVC} = \frac{\text{본선인도가격(FOB)}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4. 특정상품의 취급 (제3.5조)

□ 한-아세안 FTA 특정상품의 취급(부속서3의 제3조) 조문과 해당 조문 이행에 관한 교환각서('09.2.27일 교환)를 동 협정에 동일하게 적용

○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서 생산·가공한 이후 국내로 재반입된 상품에 대해서도 한-인도네시아 CEPA 특혜대우 부여 가능

5. 누적기준 (제3.6조)

□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다른 당사국의 생산·가공 과정에 투입되는 재료로 사용될 경우,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함

6. 불인정 공정 (제3.7조)

□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정의 수행만으로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하지 않는 불인정 공정을 규정

○ 상품의 운송 및 보관을 위한 보존 공정, 포장의 변경 및 해체, 직물의 다림질, 단순 혼합, 도축 등

7. 중간재 원칙 (제3.8조)

- 원산지 중간재를 투입한 상품의 원산지 여부 판단할 경우, 원산지 중간재에 비원산지 재료가 투입되었는지 여부는 미고려 (Roll-up)
- 비원산지 중간재를 투입한 상품의 원산지 여부 판단할 경우, 비원산지 중간재에 투입된 원산지 재료는 고려 (Roll-down 금지)

8. 직접 운송 (제3.9조)

- 특혜관세 대우는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는 원산지 상품에만 적용
 - 다만 비당사국을 경유하더라도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직접 운송으로 간주
 - 경유가 지리적 이유 또는 운송요건에 의하여 정당화될 경우
 - 원산지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는 경우
 - 원산지 상품이 경유국에서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의 보존을 위한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9. 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 (제3.10조)

-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 FOB의 10% 이하일 경우, 해당 상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 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은 원산지기준 판정의 효율성을 위해 우리 기체결 FTA 대부분에 반영됨
- 다만, 섬유 및 의류(제50류-제63류)는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상품 중량의 10% 이하인 경우에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10. 포장재의 취급 (제3.11조)

- 소매용 포장재의 가치는 세번변경 기준의 충족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해당 상품의 일부로 고려되지 아니함
- 상품 운송용 포장재 및 용기는 원산지 판정 시 고려되지 아니함

11.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제3.12조)

- 상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세번변경 기준의 충족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고려되지 아니함

12. 중립재 (제3.13조)

- 상품 생산에 사용되었으나, 결합되지 않은 연료, 공구, 예비부품, 윤활제, 안전장비 등 중립재는 원산지 판정시 고려되지 아니함

13.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 (제3.14조)

-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상품 또는 그러한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경우, 재고관리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

* 동종이고 상업적으로 동질이며,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보유하고, 일단 최종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원산지 목적상 어떤 표시 등에 의해서도 서로 구별될 수 없는 상품 또는 재료

14. 품목별원산지기준(PSR) (부속서 3-가)

- 한-아세안 FTA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되, 양국의 생산 과정 및 교역 패턴을 고려하여 보다 무역촉진적 방향으로 품목별원산지기준을 개선

- (철강) 원재료 조달, 양국 산업구조 등을 고려,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RVC40)” 기준이나, 스테인레스강 중 일부 품목은 “6단위 세번변경(CTSH) 또는 부가가치 40%(RVC40)” 기준으로 개선
- (자동차) 한-아세안 FTA에서는 부가가치 기준이 대부분 45%(RVC45) 이었던 데 반해, 한-인니 CEPA는 부가가치 기준을 40%으로 하여 업계 활용이 보다 용이하도록 개선
- (기계, 전기·전자_84~85류) 한-아세안 FTA에서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RVC40)”이나, 양측 교역촉진을 위해 일부 품목(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을 “6단위 세번변경(CTSH) 또는 부가가치 40%(RVC40)”으로 개선
- (섬유·의류) 업계 활용 편의 진작을 위하여 세번변경 단일 기준 적용, 한편 한-아세안 FTA의 의류에 대한 추가적인 공정기준(재단 및 봉제) 또는 역외산 재료 활용 불가 조건을 삭제하여 교역 촉진
- (농축수산물) 신선농수산물은 대체로 한-아세안 FTA 기준(완전 생산기준(WO))을 유지하되, 수산물, 낙농품, 식물성추출물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비율을 높임

15. 원산지 증명 (제3.15조, 제3.16조, 제3.17조)

- 원산지 증명은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기관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인증수출자 자율 발급 및 수출자 또는 생산자 자율발급은 순차적으로 도입
- (기관증명) 원산지 증명서는 서류 및 전자 형태* 모두 사용 가능하고, 양식은 부속서 3-나-1 및 부속서 3-나-2로 규정

* 전자적 원산지 정보가 교환시스템을 통해 관세당국 간에 교환되는 경우, 수입국의 관세당국은 수입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 요구 생략 가능

- (자율증명) 인증수출자 자율발급은 발효 2년 이내(또는 양국 합의일)에 도입하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 자율발급은 발효 후 10년(10년 추가 연장 가능) 이내 이행

16. 특혜관세 신청 절차 (제3.18조)

- 수입자는 수입 당시에 원산지 증명에 기초하여 특혜관세대우 신청 가능
 -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명시된 기간 이내에 특혜관세 사후 신청 가능

17.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제3.19조)

- 미화 200불 이하 또는 수입국이 정한 그보다 높은 금액 이하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면제

18. 기록 유지 요건 (제3.20조)

- 수출자 및 생산자, 발급기관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기록을 유지하고, 수입자는 수입일로부터 최소 3년간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

19. 원산지 검증 (제3.23조)

- 수입국이 수출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간접검증 방식을 도입하고, 필요시 수출국 방문검증이 가능하도록 규정
 - 수입국은 방문검증 이전에 수출국 발급기관 및 관세당국 등에 서면 통지하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

- 방문검증은 연기 가능하며, 연기 요청 통지 수령일로부터 60일 또는 당사국 간 합의한 그 이상의 기간 이내에 방문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방문검증 통지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검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 배제 가능

20.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제3.25조)

- 양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 절차 관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음

4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개요

-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분야는 상품의 반출, 협력, 재심 및 불복 청구, 사전심사, 관세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 관련 내용을 규정
 - (재심 및 불복청구) 수입자에게 행정적 재심 및 사법적 재심 절차를 보장
 - (사전심사) 수입자, 상대국 수출자 및 생산자가 품목분류, 관세평가, 양 당사국이 합의한 사안의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위원회) 원산지 기준 및 절차,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관세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

상세내용

1. 상품의 반출 (제4.2조)

-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하여 간소화된 통관 절차 채택 및 유지
 - 수입물품 도착 전 전자적으로 통관 정보를 제출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 등

2. 협력 (제4.5조)

- 통관 기술 및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전산화 시스템에 관한 전문성을 교환, 국제표준에 따라 무역에 사용된 문서 및 자료 요소의 조화를 추구 등

3. 재심 및 불복청구 (제4.8조)

- 관세 관련 결정에 대하여 당사국 영역 내 수입자에게 당해 결정을 내린 공무원 또는 기관과 독립된 행정적 재심과 사법적 재심을 보장하도록 규정

4. 사전심사 (제4.10조)

- 당사국 수입자,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품목분류, 관세평가, 기타 당사국이 합의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5. 관세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 (제4.13조)

- 원산지 규정 및 절차,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규정
 - 원산지 규정 및 절차,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챗터의 이행과 이를 위한 통일규칙 검토, HS 변경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정 등 역할 수행
 - 위원회는 매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 개최

5

무역구제

개요

- FTA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인해 수입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양자 세이프가드 도입
- 무역구제 조치의 발동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WTO 대비 엄격한 규정에 합의함으로써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 관세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상세내용

1. 세이프가드 (제1절)

[양자 세이프가드]

-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한 결과, 동종 및 직접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정지 또는 최혜국(MFN) 관세율 수준까지 관세 인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 발동기간은 2년 이하,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3년이 최대한도), 별도 합의 없는 한 과도기간* 내 발동
 - ※ 과도기간 : 협정 발효 이후 10년, 관세철폐기간이 10년 이상인 품목은 관세철폐 기간
- 산업피해의 '실질적인 원인(substantial cause)'일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점진적 자유화, 보상·보복 규정을 도입하여 FTA 무역 자유화 취지에 역행하는 양자 세이프가드 남용을 방지
 - ※ WTO 세이프가드협정은 상대국의 수입이 산업 피해의 원인일 시 조치 허용

[다자 세이프가드]

-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시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상대국의 수출품을 발동 대상에서 재량적으로 면제 가능
- WTO협정에 따른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 권한을 보유하되, 동일한 상품에 대해 양자 세이프가드와 다자 세이프가드 동시 발동 금지

2. 반덤핑 및 상계조치 (제2절)

- 덤핑마진 산정시 '제로잉 금지' 관행 준수
 - ※ 제로잉(Zeroing) 금지 : 반덤핑 마진 계산시 양 또는 음의 값에 상관없이 모든 개별 마진을 평균 계산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음의 마진을 임의로 누락하여 총 덤핑마진이 높게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원칙
- 덤핑마진이 국내 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을 경우,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최소부과원칙('lesser-duty' rule) 규정 도입
 - ※ WTO 반덤핑협정상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은 바람직한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 사항(WTO 반덤핑협정 제9.1조)
- 반덤핑 신청을 접수 시 조사개시 15일 전까지 신청 접수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
 - 상계관세 신청 접수 시에는 조사개시 이전 가능한 조속히 신청 접수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 기회 제공
- 재심으로 반덤핑 조치가 종료된 후 12개월 내 동일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여부를 '특별한 주의(special care)'를 갖고 검토
- 2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이 동시에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관련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적절한지를 '특별한 주의'를 갖고 검토

※ WTO 반덤핑 협정상 합산 여부는 조사당국의 재량(WTO 반덤핑 협정 제3.3조)

-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협력 증진, 반 우회덤핑 조사를 위한 현지 실사 전 사전 통보, 최종판정 전 핵심사실 공개 등 반 우회덤핑 조사 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6

서비스무역

개요

- 한-인니 CEPA 서비스 분야는 제6장 본문, 제6장 부속서(총 5개) 및 제6장 부록(총 4개)으로 구성
 - 부속서 6-가 : 금융서비스
 - 부속서 6-나 : 자연인의 이동
 - 부록 6-나-1 내지 6-나-4 :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구체적 약속
 - 부속서 6-다 : 전문직 서비스
 - 부속서 6-라 : 한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부속서 6-마 : 인니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
 - 양측 모두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시장 개방 추진
 - 특히, 인니는 온라인게임·유통 서비스를 새롭게 개방하는 한편 건설 관련 서비스도 한-아세안 FTA 대비 개방 수준을 높임
 - 일부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유화 역진방지 장치(래칫)’ 규범을 새롭게 적용*하는 등 양허의 질적 개선도 도모

※ 인니측 : 법률, 국제해상여객, 건설·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13개 분야
우리측 : 엔지니어링, 광고, 패키징, 관광가이드 서비스 등 35개 분야

상세내용

1. 적용범위(제6.2조)

-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모든 조치
 - 다만 연안 해상운송 서비스, 항공 운송 서비스*, 정부조달, 정부 보조금, 정부권한 관련 제공 서비스는 제외
 - ※ 항공 운송 서비스 중 항공기 유지 및 보수, 항공 운송 관련 판매 및 마케팅,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는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

2. 일반적 의무

-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제6.3조)
 -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
 -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상이한 대우라도 자국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공급자와 비교하여 자국에 유리하도록 경쟁조건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
 - 즉, 내국민대우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동등대우 의무를 의미
- 최혜국 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제6.4조)
 - 상대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3국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여야 할 의무
 - 즉, 양허표상 MFN 적용을 약속한 분야에 대해 CEPA 체결 이후, 제3국과의 무역협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약속한 경우 그러한 개방 혜택을 동 협정 상대국에게 부여(미래 MFN)
 - 다음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 이 협정 발효 전에 발효 중이거나 서명된 기존의 양자·다자 협정

※ 한-미, 한-EU 등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FTA의 혜택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을 방지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 간 경제 통합을 위한 상품, 서비스 또는 투자 자유화 협정 하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 부여하는 대우

□ 시장접근(Market Access)(제6.5조)

- 양허표에 시장접근 약속을 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한, 서비스 공급자의 수 또는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양적 제한, 사업자의 법적 형태를 제한하는 규제의 도입을 금지

금지되는 시장접근 제한 조치

- ① 서비스 공급자의 수 제한
- ②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제한
- ③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 총 산출량의 제한
- ④ 고용인의 총 수 제한
- ⑤ 사업자의 법적 형태(법인, 합작투자 등)의 제한
- ⑥ 외국인 자본 참여의 제한

3. 투명성(6.9조)

-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공표하고 구체적 약속과 관련이 있는 법률, 규정 또는 지침의 도입·수정을 신속히 공동위원회에 보고할 의무
-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조치 또는 국제적 협정 관련 구체적인 정보에 관한 요청에 신속히 응답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협정 발효 후 2년 내 문의처 설립 의무

4. 국내규제(6.10조)

- 개방한 분야에 있어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보장

-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행정 결정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사법, 중재, 또는 행정재판소 등을 설치하거나 유지할 의무
- 서비스 공급을 위해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신청서의 제출 이후 합리적 기간내에 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보(신청이 종료 또는 거절되는 경우 가능한 한 서면으로 통보)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의 처리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
- 개방 약속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면허, 자격 요건과 기술 표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의무

5. 인정(6.11)

- 상대국 내에서 습득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나 증명을 인정하기 위하여 당사국 또는 관련 기관간 협정이나 약정을 체결하거나 자발적으로 인정 가능
- 공동위원회를 통해 그러한 협정이나 약정에 관한 협상을 사전통보하고, 새로운 인정 조치의 채택 또는 현행 인정 조치에 대한 수정 시 이를 신속하게 통보

6. 지불 및 송금(6.15)

- 서비스 무역에서 자국의 구체적 약속과 관련된 모든 송금과 지불이 국내외로 자유롭게 지체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
 - 단, 다음의 사유와 관련된 경우에는 지불이나 송금을 금지 또는 연기할 수 있음
 - ①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② 유가증권·선물·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및 취급, ③ 형사범죄, ④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이나 판결의 준수 보장, ⑤ 금융규제

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의 기록 또는 보고, ⑥ 과세,
⑦ 피고용인의 퇴직금

7. 혜택의 부인(6.16)

- 제3국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상대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상대국의 법인인 서비스 공급자(paper company)에게는 동 협정상 혜택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함을 규정

금융서비스 부속서(부속서 6-가)

- 금융서비스 부속서는 금융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

1. 적용범위 (제1~4항)

- 원칙적으로 금융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모든 조치에 적용
- 다만 당사국이 당사국의 영역에서 공급하는 다음의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음
 - 중앙은행, 통화관련 국가기관 또는 통화, 환율정책을 관할하는 공공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
 - 공적퇴직연금제도 및 법적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 자국의 공공기관에 의해 정부의 계좌로, 또는 정부의 보증 하에, 또는 정부의 금융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활동

2. 건전성 조치, 환율 및 금융안전성 (제5~6항)

-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한 건전성 사유로 조치를 취할 당사국의 권한을 확인
 -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 보장
 - 환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 ※ 환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는 필요 이상으로 취해져서는 안되며, 1년 이내 또는 지속이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 단계적으로 종료

자연인의 이동 부속서(부속서 6-나)

- 한-인니 CEPA 자연인의 이동 분야는 제6장 부속서 및 부록(총 4개)으로 구성
 - 부록 6-나-1 :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구체적 약속(한국)
 - 기업 내 전근자(ICT), 상용 방문자(BV), 계약서비스 공급자(CSS)
 - 부록 6-나-2 :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구체적 약속(인니)
 - 기업 내 전근자(ICT), 상용 방문자(BV)
 - 부록 6-나-3 : 독립전문가(IP)
 - 부록 6-나-4 : 독립전문가 목록
- 특히 독립전문가*(Independent Professional) 상호 양허로 양국간 전문인력의 교류 확대 효과 기대
 - ※ 양허한 분야에서 적정 교육 및 자격을 획득하고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전문직

1. 적용범위(제1~2항)

- 당사국 자연인의 상대국 영역으로의 입국 또는 일시적 체류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국의 조치에 적용
- 자연인의 이동 부속서가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연인이나 국적, 영주 또는 영구적 고용에 관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

2. 입국 및 일시체류의 허용(제7~11항)

- 일시입국을 하고자 하는 자연인이 출입국 절차를 위한 신청절차 및 모든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록에 명시된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따라 일시입국 및 체류를 허용함을 명시

- 자연인의 고용장소에서 진행 중인 노동분쟁해결 또는 그러한 분쟁에 자연인이 관련되어 있을 경우 당사국은 입국비자 거절 가능

3. 정보의 제공(제12~14항)

- 협정 발효일에 다른 쪽 당사국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과 관련한 신청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이용가능토록 제공

4. 신속 신청 절차(제15~17항)

- 각 당사국은 출입국 절차를 위한 신청을 수령한 뒤,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
 - 신청인의 요청시, 신청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완전한 신청의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신청인에게 통보
 - 신청이 거부되었을 경우, 거부처분의 사유를 서면, 전자메일로 통지

5. 분쟁해결(제23~24항)

- 양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견을 협의의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
- 다만 일시 입국 허용 거절에 관해, ① 그 사항이 반복된 관행(pattern of practice)과 관련이 있고, ② 해당 당사국의 자연인이 가능한 모든 행정적 구체절차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만 이 협정의 분쟁해결 절차 적용 가능

한국의 구체적 약속(부록 6-나-1)

- 기업내 전근자, 상용 방문자,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입국·일시 체류 관련 요건 및 체류기간 명시

구분	내용
기업내 전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된 한국 영역에 설립된 자회사, 지정 또는 지정된 계열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피고용인(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가) · (조건 및 제한) 출입국관리법·노동관련법령 준수, 3년까지 입국 및 체류 허용(조건이 유효하게 유지될 시 기간연장 가능)
상용 방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판매자로서 서비스 판매 협상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 하는 자(직접 판매 수반하지 않는 자) · (조건 및 제한) 출입국관리법·노동관련법령 준수, 90일까지 입국 및 체류 허용
계약서비스 공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학 자문, 회계 자문, 경영컨설팅 등 분야에서 대한민국에 상업적 주재를 두지 않는 기업(한국의 기업으로부터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서비스 계약을 취득해야 함)의 피고용인,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 고용된 자, 한국 소재 기업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 · (조건 및 제한) 출입국관리법·노동관련법령 준수, 최대 1년까지 입국 및 체류 허용, 경제적 수요심사 및 수량제한 부과 가능

인니의 구체적 약속(부록 6-나-2)

□ 기업내 전근자, 상용 방문자의 입국·일시 체류 관련 요건 및 체류 기간 명시

구분	내용
기업내 전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 관리자 및 기술전문가 · (조건 및 제한) 출입국·노동 관련법령 준수, 2년까지 입국 및 체류 허용(각 2년씩 최대 두 차례 연장 가능), 관리자·기술 전문가에 경제적 수요심사 부과 가능
상용 방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서비스 판매를 위한 협상을 포함한 사업 접촉 및 인니 내 상업적 주재 설립을 위한 준비를 목적으로, 자국 내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자연인(직접 판매 수반하지 않는 자) · (조건 및 제한) 출입국·노동 관련법령 준수, 최대 120일까지 입국 및 체류 허용

독립전문가 (부록 6-나-3, 6-나-4)

- 독립전문가 양허를 위한 자격요건 및 양허직종 나열
 - 독립전문가는 최대 1년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당사국의 법규정에 따라 연장 가능
 - 당사국은 경제적 수요심사 적용 및 수적 제한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당사국의 법규정에 따라 비용(charges) 부과 가능
- 양국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가능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SW' 등 여러 분야의 고급 전문인력의 상호 원활한 이동에 대해 약속
 - ※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화학공정 계측 공학자 등
- 한편 불법체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독립전문가의 입국 및 체류를 한정할 수 있는 당사국의 권한 유보
- 부록 6-나-4에는 상호 양허하기로 합의한 총 128개 전문가 직종이 Section A(10개)와 Section B(118개)에 명시
 - ※ 인니 既체결 무역협정 최초로 제시한 독립전문가 양허목록이며, 우리측은 한-인도 CEPA 등에서 이미 양허한 IP 범위 내 직종
 - 상대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당사국 독립전문가는 출입국 조치에 따르는 동시에 ① 상대국 법인과 체결한 고용계약서, ② 관련 교육 요건 또는 대체 자격의 취득을 입증하는 서류 등의 제시 필요

전문직서비스 부속서 (부속서 6-다)

- 양국 관련 기관간 상호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 전문직 자격을 인정하고, 전문직 표준 및 자격 개발을 위해 대화체 설립을 독려
- 가능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 자국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증명과 면허를 위한 표준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

양허 주요내용 (부속서 6-라 및 부속서 6-마)

1. 전반적 개방 수준

- 양측 모두 한-ASEAN 플러스 수준의 서비스 시장 개방 추진
 - 우리측은 35개 분야, 인니측은 13개 분야에서 향후 규제 수준을 후퇴시키지 않는다는 '자유화 역진방지 장치(래킷)' 규범을 새롭게 적용
 - 특히 인니측은 온라인게임·유통 서비스를 새롭게 개방하는 한편 건설 관련 서비스도 한-아세안 FTA 대비 개방 수준을 높임

2. 인니측 양허 수준

- 한-아세안 양허 대비 신규개방 및 기존 개방분야 질적 개선 도모
 - (신규개방) 우리측 관심분야인 유통·문화콘텐츠 등 분야 신규 개방
 - 유통 : 도매·소매·프랜차이즈·직접판매 등의 세부 분야 신규 개방,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율도 국내 상한 수준(67%)으로 개방
 - 문화콘텐츠 : 영화·비디오 제작 및 배급, 영화상영, 음반제작, 공연 및 온라인게임 등의 세부 분야 신규개방
 - 특히 게임서비스의 경우 현재 인니 내 관련 법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금번 양허를 통해 우리 기진출 또는 진출 예정업체에 최소한의 국내 규제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
 - ※ 향후 인니 내 법규범 제정시, 우리 업체에게는 한-인니 CEPA 내용 이상으로 적용 보장
 - (추가약속) 한-아세안에서 기 개방하였던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부가통신 등 다수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율 등 개선
 - ※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55%→67% (부가통신서비스 등) 40%→51% 등

개요

- 한-인니 FTA 투자 분야는 제7장 본문^①정의, ^②투자규범, ^③ISDS) 및 관련 부속서로 구성
 - 정의 조항(제 7.1조)에서는 투자챕터상 관련 용어 정의(definition)를 규정
 - 투자규범 조항(제 7.4조~7.18조)에서는 외국인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투자유치국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대우 및 예외를 규정
 -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투자의 대우, 손실에 대한 보상, 투자 관련 이행요건 부과 금지,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 제한 금지, 비합치 조치*, 송금 보장, 혜택의 부인 등
 - ※ 투자챕터상 의무(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요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치 조치를 유보목록에 기재
 - ISDS 조항(제 7.19조)에서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를 규정
 - 관련 부속서에는 국제관습법, 간접수용에 대한 판단 법리 및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규정
- 한-아세안 FTA에서 미합의된 한-인도네시아간 투자 시장개방 유보 목록에 합의
 - 우리나라 현재·미래 유보(Annex I, Annex II) 및 인도네시아의 현재·미래 유보를 별도 부속서 목록으로 수록

상세내용

1. 정의 (제7.1조)

□ 투자

- 투자자가 소유 또는 지배하며, 자본 또는 기타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위험의 감수 등과 같은 투자의 성격을 가진 모든 자산으로서, 아래 형태를 포함
 - ① 기업, ② 주식, 증권, 기타 기업의 지분 참여, ③ 채권, 회사채, 기타 채무증서 및 대부, ④ 완성품 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허, 수익배분 및 기타 유사한 계약, ⑤ 지식재산권, ⑥ 면허, 인가, 허가 및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는 유사한 권리, ⑦ 기타 유·무형의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리스, 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 관련 재산권
- 그러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상업적 계약 또는 그러한 상업적 계약과 연결된 신용의 공여로부터 발생하는 지급청구권은 투자에 해당되지 않음

□ 투자자

- 상대방 국가의 영토 내에서 투자하고자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일방의 국민 또는 기업을 의미

2. 적용범위 (제7.2조)

□ 외국인투자자 및 적용대상투자자와 관련된 당사국의 조치*

- ※ 당사국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비정부기관의 조치도 포함
- 협정 발효 전에 발생한 사건 및 행위, 발효 이전에 종료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소급효 배제)
- 서비스 투자(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는 서비스 협정에서 규율하고, 미서비스 투자(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등)에 한해 투자협정에서 규율

내국민 대우 (제7.4조)

- 외국인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동종 상황(like circumstances)에서 내국민 투자 및 투자자 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진입단계의 투자(설립, 인수, 확장)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를 보장하도록 규정
 - ※ 투자보호의 대상인 투자자(investor of a Party)의 범위에 투자를 시도하는(is seeking to make an investment) 자도 포함

최혜국 대우 (제7.5조)

- 외국인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동종 상황(like circumstances)에서 제 3국의 투자 및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다른 협정에서 이 협정보다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이 협정의 당사국에게 자동적으로 그러한 추가적 혜택이 부여
 - 다만 동 최혜국대우는 ISD 등의 국제분쟁 해결 절차나 메커니즘에 적용되지 않음

투자의 대우 (제7.6조)

-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에 따른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보장
 - ※ 다만 이 협정 및 별도 국제협정 위반이 있었다는 판정이 이 조에 대한 위반을 입증하지 않음

이행 요건 (제7.8조)

-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매각 등에 관하여 아래 특정 이행의무의 부과를 금지
- 일정수준 국내재료 사용, 국내상품 사용, 수출과 수입간의 연계,

수출과 판매간의 연계, 일정수준 수출, 기술이전, 특정지역으로의 독점공급 등 7가지

- 단, 일정 수준의 수출 의무와 기술이전, 특정지역으로의 독점공급 의무 등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 이행 의무 부과 가능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7.9조)

- 외국투자기업의 고위경영진 임명에 국적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
- 외국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에 대한 국적요건은 부과 가능
 - 단, 그러한 요건이 외국인 투자자의 해당투자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아야 함

비합치조치 (제7.10조)

- 유보목록에 기술된 조치에 대해서는 협정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아래와 같이 규정
 - 1) 내국민대우, 2) 최혜국대우, 3) 이행요건, 4)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등에 대해 합치되지 않는 조치를 협정 부속서 유보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동 조치에는 상기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송금 (제7.11조)

- 초기자본금, 이윤, 배당금, 이자, 자본이득, 로열티 등을 자유롭게, 그리고 지체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규정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 파산, 지급불능, 채권자 보호, 증권 등의 거래, 형법 적용, 규제 당국의 법집행으로서 금융기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세, 퇴직금 등

수용 및 보상 (제7.12조)

- 정부는 1) 공공목적을 위해 2)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3) 비차별적 방법으로 4) 신속·적절·효과적으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으로 보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용 또는 국유화 가능

대위변제 (제7.13조)

- 국가기관의 해외투자보험에 가입한 투자자가 상대국의 조치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동 국가기관이 투자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상대국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명시

혜택의 부인 (제7.15조)

- 제3국인이 소유하고 타당사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타방 당사국 기업(이른바 paper company)에게는 협정상 혜택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함을 규정

환경 조치 (제7.16조)

- 자국 환경조치를 완화함으로써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를 장려하거나 투자를 확장하기 위하여 환경조치를 면제 혹은 이탈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명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제7.19조)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제7.4조(내국민 대우), 제7.5조(최혜국 대우), 제7.6조(투자의 대우), 제7.7조(손실에 대한 보상), 제7.9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7.11조(송금) 및 제7.12조(수용 및 보상)의 의무를 위배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분쟁해결절차 제소 이전 분쟁당사국이 투자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조정 절차(mediation process) 개시 가능성을 규정

□ 다음 사항에 대해 분쟁해결절차 청구 제기가 불가능함

- 1) 다른 국제협정이 보다 유리한 권리 또는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만 기초하여 최혜국 대우 위반 주장시*, 2) 공중보건 관련 조치, 3) 허위진술, 은폐, 부패 등 불법행위를 통해 설립된 투자, 4) 동 협정 발효 이전 발생한 투자 분쟁, 5) 청구가 경솔하거나 명백히 근거 없는 경우 6) 분쟁당사국의 국적이나 시민권을 지닌 자국민에 의한 제소

※ 단, 정부가 다른 국제협정의 보다 유리한 대우 조항에 근거하여 구체적 조치를 취한 경우 동 조치에 근거하여 최혜국 대우 위반 주장 가능

□ 투자협정의 핵심 규정인 사전동의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양 당사국이 본 협정의 체결을 통해 투자분쟁을 중재에 회부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동의함을 규정

※ 국제중재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중재관할에 대한 분쟁당사국의 동의가 필수적임. 협정문에 피청구국의 사전적·일반적 동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투자자가 중재청구를 제기하면 중재판정부는 별도의 분쟁당사국 동의 절차 없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 보유

□ 이용가능한 중재기관·절차

-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 World Bank 산하기구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63개 회원국에서 투자자-국가간 분쟁절차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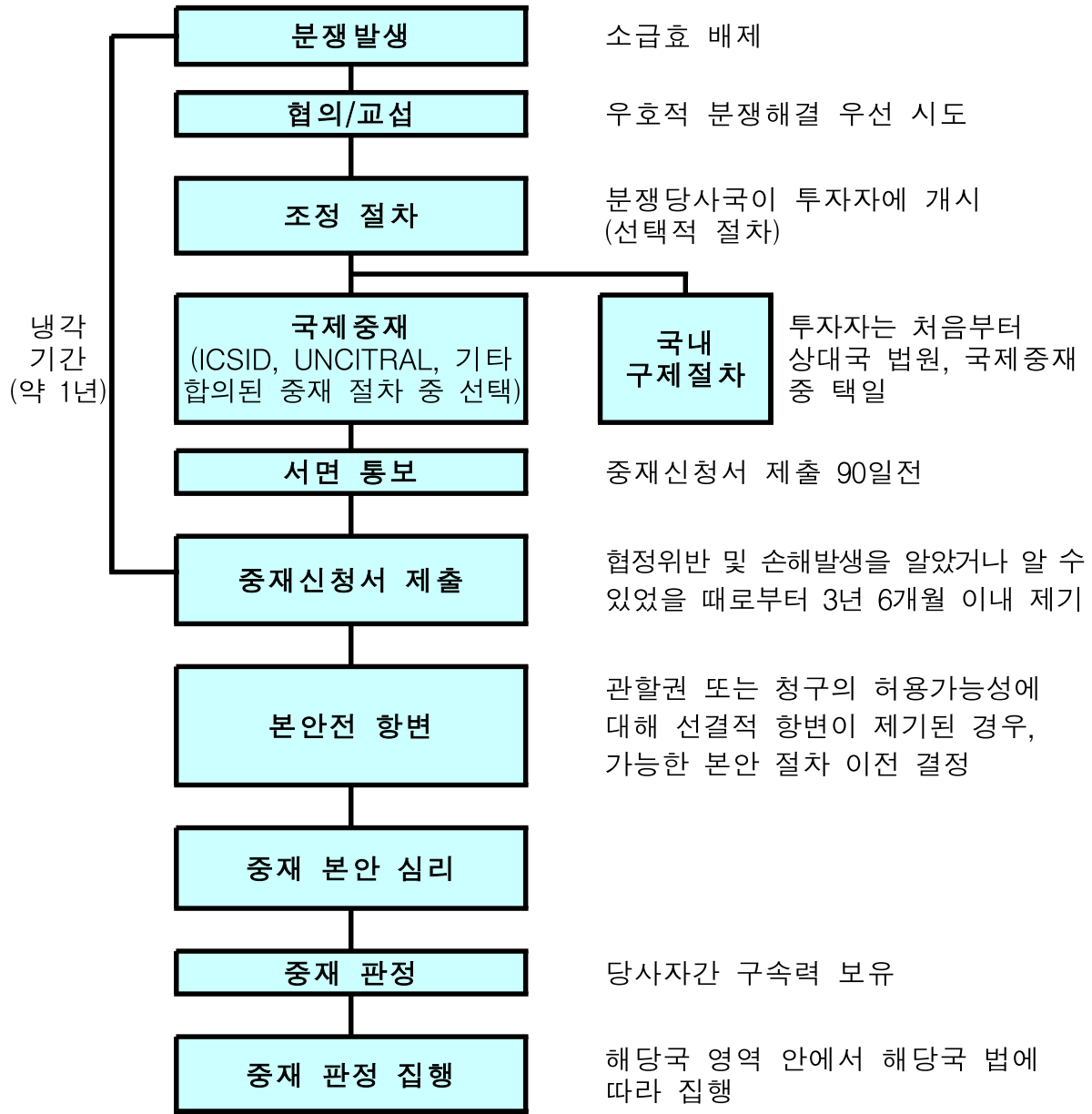
※ ICSID 추가절차규칙: ICSID 협약에 따른 중재절차의 관할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모국과 피청구국이 모두 ICSID 협약의 당사국이어야 하는 등 협약 제25조에 정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반면, 양국 중 일방이 ICSID 협약 회원국이 아닌 경우에는 추가절차 규칙에 따라 중재절차 진행 가능

-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 국제 상거래법 제정을 위한 UN 산하 전문위원회로서 국제 중재 절차 및 규칙을 규정

-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제3의 중재기관 또는 중재규칙
- 국내 중재와 국내 제소 절차와의 관계 관련, 상대국의 법원 또는 국제중재 절차 제소 중 하나를 선택한 후에는 다른 절차 제소가 불가능함 ("fork in the road" 방식)
- 국제중재는 3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Tribunal)에서 심리
 -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가 각각 1인을 지명하고, 의장중재인이 되는 나머지 1인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선임
- 동일 사건·상황의 동일한 조치에 대한 중복소송 제한을 규정
 - 투자유치국의 소송대응 역량 분산 및 중복 손해청구 우려 방지 목적
- 중재판정부에 의한 판정·결정을 공개하여 중재판정의 투명성 확보
 - ※ 단, 비밀정보는 보호되도록 조치를 취함
- 중재판정은 단심제로서 확정력을 가짐 (final and binding)

< ISD 절차 개요 >



수용 (부속서 7-나)

- 직접수용 및 간접수용의 정의와 간접수용의 판단 법리를 규정하여
중재 재판부에 간접수용의 명백한 판정 지침을 제시
- 간접수용을 '당사국의 행위가 명의의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가
없더라도 직접 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국가조치'라고 정의

- 간접수용 해당 여부 판단은 1) 정부행위의 경제적 영향, 2) 정부행위가 분명하고 합리적인 투자자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정도, 3) 정부행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결정
- 상기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가격안정화 등 정당한 공공복지*를 위한 비차별적인 정부의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 ※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은 한정적이지 않음
- 특히, 간접수용 판단법리에 우리 대법원의 수용 법리상의 원칙인 '특별희생'법리를 추가하여 정부조치로 인하여 특정 투자자에게 "공익을 위하여 감수해야 할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한 희생'이 투자자 또는 투자에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정부조치의 성격을 심리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로 규정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 (부속서 7-다)

- 국제수지악화 및 외환위기 등 심각한 대내외 여건 변화가 있을시, 외국환거래를 통제하는 단기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
- 단기세이프가드 발동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며 세이프가드 발동 유발상황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지 않고, 상황이 개선되는 경우 점진적으로 폐지
- ※ 단, 특정 상황에서 조치의 갱신이 가능함
- 단기세이프가드 조치는 발동시 1) 몰수에 상응하거나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해서는 안되고, 2) 투자자의 시장수익률 운용능력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채택되지 않아야 하며, 3) 국제통화기금협정과 합치하고, 4) 상대국 및 상대국의 투자자·투자에 불필요한 손해를 피해야 하며, 5)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에 기초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6) 상대국에게 신속히 통지되어야 함

투자 유보 목록

- 네거티브(Negative) 자유화 방식을 채택하여, 투자협정상 주요 의무에 위배되는 현재 및 미래의 비합치조치를 유보 목록(부속서 I, II)으로 명시함으로써 당사국의 의무*를 제한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요건 부과금지,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국적요건 부과금지

유보의 종류

- ① 현재유보(부속서 I) :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나열
- ② 미래유보(부속서 II) :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

- 우리나라는 총 21개(현재유보 4개, 미래유보 17개), 인도네시아는 총 33개(현재유보 18개, 미래유보 15개)의 유보 목록을 작성
-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양측 모두 공공정책 목적상 필요한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 자율권을 충분히 확보
 - 우리측은 국내적으로 민감한 분야인 부동산 취득, 총포·도검·화약류 및 유사물품, 에너지(원자력, 전력, 가스), 어업, 문화유산, 주류제조 등의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측은 부동산 취득, 제조업(담배, 보석품, 공예품 등), 농업, 임업, 어업 등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권한을 확보

8

경제협력

개요

- 경제협력의 기본원칙(제1조)을 규정하고, 개별 협력분야(제2조) 및 형태(제3조)를 세부 조항에 상세 명시
 - 양국의 관심분야를 5가지 부문(산업, 농림수산업 및 임업, 무역 규칙 및 절차, 자연인의 이동, 기타)으로 구분하고 다양한 세부분야를 포괄하여 양국간 협력강화 계기 마련

상세내용

1. 협력 분야 (제8.2조)

- 자동차, 철강 및 금속, 화학제품, 정보통신기술, 전자제품, 기계, 의류, 섬유 및 의복, 선박, 항공기, 식품 및 음료 등 산업 전반
- 농림수산분야에서 축산 및 작물 생산, 수산업 및 임업 분야에서의 투자여건 개선, 산림 관리, 농업 기반 식품 가공 등
- 무역 규칙 및 절차에 있어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위생 및 식물위생, 통관절차, 원산지 규정 및 그 밖의 관세양허 이행의 측면, 지식재산 등
- 자연인의 이동 관련 분야는 전문가 그리고 연수생
- 그 밖에도 중소기업 지원 정책, 통계, 공정 경쟁, 사회기반 시설, 투자, 과학, 기술 및 혁신, 문화 및 그 밖의 창의적인 분야, 에너

지 및 광물 자원, 보건의료, 환경, 건설서비스 등의 협력 분야 포함

2. 협력 형태 (제8.3조)

- 분야별로 기술지원, 인적자원 훈련, 데이터 및 정보 교환, 전문가 교류, 세미나 및 워크숍, 제도설계 및 개선, 분야별 종합추진계획 및 발전전략 수립, 모범사례 공유, 기초연구, 공동 연구 및 개발 등 다양한 협력 형태를 규정

3. 이행 (제8.4조)

- 각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른 협력을 이행하도록 함
- 협력의 이행을 위한 위원회 설립 및 이행약정 포함으로 이행의 효과성 제고를 도모

9

투명성

정의 (제9.1조)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이란 모든 인(人)과 사실상황에 적용되고 행위규범을 형성하는 행정판정 또는 해석을 의미

공표 (제9.2조)

-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국내법·규정·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신속히 공표
- 가능한 한도에서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제안된 조치를 사전에 공표하고 이해관계인과 상대국에게 의견제시 기회 보장

정보의 제공 (제9.3조)

-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해당되는 조치(조치안 포함)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

행정절차 (제9.4조)

- 행정절차가 개시된 때에 가능한 경우 절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대국 이해관계인에게 절차의 성격 및 법적근거, 쟁점사항에 대해 통보하고, 최종 행정처분 이전에 의견개진 기회 제공

재심 및 불복청구 (제9.5조)

-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신속한 재심 또는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 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절차를 수립·유지

10

분쟁해결

개 요

- 분쟁해결절차는 “①당사국간 협의 → ②패널 설치 → ③패널보고서 제출 → ④패널보고서 이행 → ⑤보상 및 혜택의 정지”의 순서로 진행
- 협정상 분쟁해결절차와 WTO협정상 절차, 분쟁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무역협정상 분쟁해결절차에 모두 해당할 경우, 제소국에 선택권을 부여하되, 하나를 선택한 경우 다른 절차의 이용을 제한
- 분쟁해결절차의 신속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 마련
 - 협의, 중재패널, 이행, 보상 및 보복 등 분쟁해결의 모든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한을 규정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유도
 - ※ ‘부패성 상품’ 등 긴급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축 시한 적용
 - 패널 판정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패널보고서의 구속성을 명시하고 양허·기타의무 정지(혜택 정지) 절차를 규정

상세 내용

목적 (제10.2조)

- 협정의 해석·적용에 대한 합의,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한 협력 및 협의 노력을 규정

범위 (제10.3조)

- 분쟁해결 챗터는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과 관련하여, “①협정상 의무와의 불합치 조치, ②협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적용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제10.4조)

- 분쟁이 ①이 협정, ②WTO협정, ③당사국들이 당사자인 다른 협정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제소국은 분쟁해결 포럼 선택 가능
 - 분쟁해결 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 시, 다른 절차의 이용 제한

협의 (제10.5조)

- 요청국의 서면 협의 요청 → 피요청국은 접수 10일 내 서면 응답
→ 30일(부패·계절상품 : 15일) 내 다른 쪽 당사국에서 협의 개시
→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60일(부패·계절상품 : 30일) 내 종결

주선, 조정 및 중개 (제10.6조)

- 분쟁해결의 대안적 수단으로 당사국들은 주선, 조정, 중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 및 당사국들의 입장은 비공개로 유지
 - 당사국들은 절차를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으며, 절차가 당사국들간 합의 없이 종결되면 제소국은 패널 설치를 요청 가능

패널의 설치 (제10.7조)

- 협의 절차를 거치고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서면으로 패널설치 요청 가능
- 패널은 세 번째 패널위원이 선정된 날에 설치되며, 패널선정 시 아래 절차가 적용

패널 구성(제10.9조)

- ◇ (인원) 패널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1항)
- ◇ (의장) 당사국들이 의장이 될 세 번째 패널위원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 후보명부 구성원 중 추첨(2항)

분쟁해결절차 (제10.10조~15조)

- 패널 설치 이후 분쟁해결절차는 “①패널심리(제10.10조) → ②중간 보고서 제출(제10.12조) → ③최종보고서 제출(제10.13조) → ④패널보고서 이행(제10.14조)”의 순서로 진행
 - 불이행시 양 당사국은 상호 만족할 만한 보상책에 대해 협의해야 하며, 협의실패시 제소국은 협정상 혜택 등을 정지할 수 있음(제10.15조)

절차 규칙 (제10.16조)

- 분쟁해결 챗터의 절차 규칙은 “부속서 10-가 중재판정 절차 규칙”에 따르며, 동 규칙 및 “부속서 10-나 패널위원 행위규범”은 분쟁해결 챗터의 일부를 구성함

일반적 예외 (제11.1조)

- GATT 제20조 및 GATS 제14조의 일반적 예외 적용
 - GATT 제20조와 관련 주해 적용 챕터 :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 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4장(통관 및 무역원활화), 제5장(무역구제)
 - GATS 제14조 적용 챕터 : 제6장(서비스 무역), 제7장(투자)

참고 : GATT 제20조/GATS 제14조상의 일반 예외조치

※ GATT 제20조상 예외조치

-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금·은의 수출입,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호, 역사·예술 유물의 보호, 공급부족 상품의 취득·유통에 필수적인 조치 등

※ GATT 제14조상 예외조치

- 공중도덕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안전, 사기 행위의 방지, 사생활의 보호 등을 위한 조치

안보 예외 (제11.2조)

- 국가 안보상의 예외조치 허용
 - 필수적 안보 이익에 반하는 정보의 비공개 가능
 - 필수적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한 조치 또는 국제평화 및 안보의 유지를 위한 UN헌장상 의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 가능

과세조치 (제11.3조)

- 과세조치는 원칙적으로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협정과 여타 조세협약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조세협약이 우선
 - 과세조치에 적용되는 조항 : GATT 제3조, 제7.11조(송금), 제7.12조(수용 및 보상)에 따라 권리 의무가 부여되는 경우
 - 과세조치가 수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가 적용되나, ISD 회부전 권한있는 당국에 먼저 제기하고, 권한있는 당국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ISD 제소를 진행
- ※ 동조 제5항은 과세조치의 수용 구성 여부 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

정보의 비밀 유지 (제11.4조)

- 협정상 어떤 규정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익에 반하거나, 특정 기업의 상업상 이익을 손상하는 비밀 정보의 제공 또는 접근 허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12

제도 규정

공동위원회 (제12.1조)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인도네시아 통상부의 장관급 공무원 또는 그들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의장으로 하는 공동위원회 설치

공동위원회의 기능 (제12.2조)

-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에 의해 설치된 모든 위원회 및 부속기관의 업무를 감독하고, 협정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관한 불일치의 해결을 위해 노력
- 공동위원회는 위원회 및 부속기관을 설치하고, 첫 번째 회합에서 자신의 절차 규칙을 채택하고,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권고할 수 있음

공동위원회의 절차 (제12.3조)

- 양 당사국은 매년 정기 회기로 회합하고, 한 쪽 당사국의 요청 시 특별 회기로 회합
- 공동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짐

위원회 및 부속기관 (제12.4조)

- 이 협정에 따라 다음의 위원회들이 설치된다.
 - 제2.15조(상품무역위원회)에 따른 상품무역위원회, 서비스무역 및 투자 위원회, 제8.4조(이행)에 따른 경제협력위원회, 제4.12조

(관세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에 따른 관세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

-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들을 다루고 필요시 임시 기관을 포함한 부속기관을 추가적으로 설치 및 해산 할 수 있음
- 위원회 및 부속기관은 회합에 충분히 앞서 일정 및 의제를 공동 위원회에 알리고, 공동위원회의 정기 회합에서 자신의 활동을 보고

접촉선 (제12.5조)

- 양 당사국은 협정 적용 사안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접촉선을 지정하고 접촉선 변동 사항에 대해 상호 통보
 - ※ 접촉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인도네시아) 통상부 또는 그 승계기관

13

최종 규정

부속서, 부록 및 각주 (제13.1조)

- 협정문의 부속서(Annex), 부록(Appendix) 및 각주(Footnotes)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 구성

개정 (제13.2조)

- 양 당사국은 협정 개정에 합의할 수 있으며, 개정은 양 당사국이 필요한 모든 국내적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개정 (제13.3조)

- 이 협정에 통합된 WTO협정의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해 협의

발효 (제13.4조)

- 협정은 양 당사국이 필요한 모든 국내적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지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 발효

협정의 검토 (제13.5조)

- 제12.2(공동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이 협정은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의 발효 후 1년 후에는 언제든지 검토의 대상이 됨

존속 및 종료 (제13.6조)

- 이 협정은 제2항에 따라 종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있으며,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6개월 이후 효력 발생

- 한국어본, 인도네시아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한 정본이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